

건축개정법령

● 건설부령 제396호

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 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에 계기한 기준”을 “별표2의 기준”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를 “별표2의 기준이하”로 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6

호에 규정된”을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를 “별표2의 기준이하”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을 “법 제2조 제2호 각 ‘목’”으로, “100분의 2를”을 “별표3에서 정하는 비율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중 “운동시설”을 “운동시설(일반 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을 “별표2의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근린공원”으로 하며 동항 제4호중 “제4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을 “별표2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근린공원”으로 하고, 동항 제5호 다목중 “대중음식점”을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목중 “· 전망대”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희시설등의 종류)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유희시설·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은 별표1에서 정하는 유희시설·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을 말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중 “수평순환회전차, 경사순환회전차 및 수직순환회전차”를 “순환회전차”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을 “별표2의 근린공원중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도시공원대장작성기준”을 “[부표]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으로 하고, 동표 제8호중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별표3의 건폐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재 도시계획구역안에 폐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재원부족등의 이유로 공원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의 종류의 다양화와 공원안의 건축물에 대한 적정선까지의 건폐율상향조정으로 민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제 2조 관련)

공 원 시 설	종 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렁, 못, 폭포, 등롱, 정석, 징검다리
2. 휴양시설	야외탁자, 야유회장, 야영장, 노인정, 노인회관
3. 유희시설	씨소, 정글짐, 사다리타, 순환회전차, 모노레일, 삭도, 도섬지, 주유지, 낚시터
4. 운동시설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육상경기장, 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한다), 스케이트장, 조정장, 철봉, 평행봉, 씨름장, 레슬링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 롤러스케이트장
5. 교양시설	도서관, 온실, 야외극장,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와 고분, 성적, 고옥 기타의 유적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6. 편익시설	우체통, 공중전화실, 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을 포함한다), 약국, 유드호스텔,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음수장, 수세장
7. 공원관리시설	창고, 차고, 게시판, 표지, 조명시설, 쓰레기처리장, 쓰레기통, 수도, 정호
8. 기 타	제 1호 내지 제 7호의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별표 3]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제 5조 관련)

공 원 구 분	면 적	건 폐 율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1천500제곱미터이상	100분의 5이하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100분의 20이하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이하	100분의 15이하
도시자연공원	10만제곱미터이상	100분의 10이하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100분의 10이하
	30만제곱미터이상 50만제곱미터이하	100분의 8이하
표지공원	50만제곱미터이상	100분의 4이하
	10만제곱미터이상	100분의 2이하

자유치의 요인을 유발하여 공원조성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시공원시설중 운동시설에 씨름장·레슬링장·탁구장·유도장·태권도장 및 롤러스케이팅장을 추가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함(영 제2조 및 별표1).

나.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종래에는 도시공원의 종류에 불구하고 2/100이하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5/100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도시공원중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5/100이하로,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최고 20/100이하

에서 최저 10/100이하까지로,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도 그 규모에 따라 최고 10/100이하에서 최저 4/100이하까지로 건축물의 건폐율을 각각 상향조정함(영 제5조 및 별표3).

〈건설부 제공〉

〔별표 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 4 조 관련)

공 원 구 분	설 치 기 준	유 치 거 리	규 모
○어린이공원	제한없음	250미터이하	1천500제곱미터이상
○근린공원			
- 근린생활근린공원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없음	500미터이하	1만제곱미터이상
- 도보근린공원 (주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없음	1천미터이하	3만제곱미터이상
- 도시계획구역권근린공원 (도시계획 구역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 광역권근린공원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없음	100만제곱미터이상
○도시자연공원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 지역에 설치	제한없음	10만제곱미터이상

● 건설부령제396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24조의 3”을 각각 “영 제24조의 4”로 한다.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본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 안에서 동일대지 내부에 이전하는 행위

3. 도로 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행하는 아취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도시가스·전기통신사업용 시설 및 상수도 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차양을 설치하는 행위

12. 과적차량 단속용 시설의 설치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3”을 각각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중 “부산시·도·시 및 군 도로원표”를 “직할시·도·시 및 군 도로원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주요골자

접도구역중 도로양측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5미터 이내의 구역안에서는 본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본 건물의 동일대지 내부에서 이전하는 행위, 지형의 특수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기·상수도등 시설의 설치하는 종래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함(영 제23조제1항)